

「 운영진법 」 국가운영진을 위한 법률

2026년 2월 2일 제정 , 2026년 6월 19일 폐지.

>제1조 (운영진 정의)

운영진은 지역별 방의 부방장을 역임하며 국가 운영을 돕는 역할이다.

>제2조 (운영진 선출)

운영진은 운영자가 국정원을 통해 선출한다.

>제3조 (부운영자)

운영자가 운영진들중 부운영자를 선출할수있다. 부운영자는 운영진들을 일부 지휘하고 운영자를 자문 및 보좌한다.

>제4조 (운영진 해임)

운영자는 운영진 및 부운영자를 즉각 해임할수 있으며 이에 준하는 명분이 있어야한다.